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운영 대행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1.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규율대상이 확장되었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기 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 정 개인정보보호법("11.9월 시행)
규율대상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51만 사업자)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350만 사업자)
보호범위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 제한 규정 없음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유출 통지	관련 제도 없음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관련 제도 없음	집단분쟁제도 도입(재판상 화해 효력)
단체소송	관련 제도 없음	단체소송(권리침해 중지) 도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2. 5.)

2. 광고 대행사의 웹페이지 운영 사례

기업에서는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의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광고대행사가 B 제약회사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이를 처방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A 광고대행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A 광고대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5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탁자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6조 제2항),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고(동법 동조 제7항)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로서 위탁자인 B 제약회사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A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동법 제3조 제8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의 주체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 4장).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1항),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특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2항).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위탁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6항). 그러나, 위탁자가 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 광고대행사와 같은 수탁자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71~73조)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법 제75~76조).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